





서약서 1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학위수여)** ①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2/3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여대상자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석사·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논문의 부정행위 등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(개정 2015.2.23)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6월10일부터 시행하며,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